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8. 5. 4.
시민보건의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8. 3. 23. 다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8. 3. 25.

다. 상정일자 : 제52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98. 4. 4.) 상정, 심사

제53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98. 5. 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해석 환경과장)

가. 제안 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용조항 및 용어 변경 등 조례안을 재정비하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정소수수료는 '92년3월 제정된 후 그동안 물가상승, 종사자 임금인상, 교통체증에 따른 수송비용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정부물가 안정시책에 따라 5%이내 수수료 인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각 인용조항 및 용어 변경(안 제3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정소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3)
-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97. 3. 7 법률 제5301호), 동법시행령('97. 8. 11 대통령령 제15456호), 동법시행규칙('97. 9. 18 환경부령 제30호)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및 용어의 변경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 제4조제2항중 "법 제58조제1항"은 입법체계상 "법 제58조제1항 제5호"로 하고 별표4 제7호에서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정화조"는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단독 정화조"로 수정하여 용어의 통일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 영업관련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영업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였고,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음.

법 제58조제1항제9의2호에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동 조례(안) <별표4>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4항 관련)에 상기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분뇨수거 및 정화조정소수수료의 인상에 대하여 정화조 대행업체들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 답변요지(정해석 환경과장) :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므로 검토할 수 없기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음.

5. 토 론 요 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 정 안 요 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유동균 위원 외 1인

나. 수정이유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

다. 수정 주요 골자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음에 각각 "(이하 "법, 시행령, 규칙"이라 한다)"를 삽입함. (안 제1조)
- 불필요한 인용조문을 삭제함. (안 제3조제1항)
- 인용조문 및 용어를 수정함. (안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 별표4, 별지제1호 서식, 별지제2호서식)
- 경과조치 사항을 신설함. (안 부칙 제2항)
- 과태료부과기준에 누락된 사항을 신설함. (안 별표4)

7.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8. 소 수 의 견 의 요 지 : 없 음

9. 기 타 사 항 :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1998. 5. 4.

제안자 : 시민보건위원장

1. 수정이유 :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

2. 수정주요골자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음에 각각 "(이하 "법, 시행령, 규칙"이라 한다)"를 삽입함. (안 제1조)

— 불필요한 인용조문을 삭제함. (안 제3조제1항)

— 인용조문 및 용어를 수정함. (안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 별표4,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 경과조치 사항을 신설함. (안 부칙 제2항)

— 과태료부과기준에 누락된 사항을 신설함. (안 별표4)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규칙 제30조제1항, 제3항 및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정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 제4조제2항중 "법 제58조제1항"을 "법 제58조제1항제5호"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중 "동법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항으로 하고, 부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안 별표4제7호나목중 "(2)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정화조"를 "(2)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단독정화조"로 하고, 제14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제15호 내지 내지 제24호로 하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반 내 용	부 과 금 액(만 원)			
	1차	2차	3차	4차
14. 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 권리 의무 승계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20	50	70	100

안 별지제1호서식중 "제19조제3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안 별지제2호서식중 "제19조제3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안	수

오수·분노등산보수의지리연관법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수입연산금액을 부과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안	원

오수·분노등산보수의지리연관법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수입연산금액을 부과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기정조례(안)

의 번	안 호
--------	--------

제출년월일 : 1998. 3.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개정으로 인용조항 및 용어변경등 조례안을 개정비하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92년 3월 재정된 후 그동안 물가상승, 종사자 임금인상, 교통체증 증가에 따른 수송비용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정부물가 안정시책에 따라 5%이내 수수료 인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각 인용조항 및 용어 변경(안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 등)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10조제1항 별표3)
- 과태료부과 기준변경(안 제19조제4항 별표4)

3. 개정근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3항 및 제59조제1항등
-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필요성 : 없음

- 첨부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 ① 구청장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제3항, 법 제28조 제2항 및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 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부패조”를 “부패조등”으로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7조중 “법 제19조제2항 및 규칙 제27조”를 “법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3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법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을 “법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9조제6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정화조의 용량”을 “정화조의 실제용량”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중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호중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규칙 제55조, 제56조”를 “규칙 제79조, 제80조”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41조”를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8조, 제21조 및 제53조”로 한다.

“별표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 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	뇨	18 l	230		
정 화 조	기	분	0.75m'	17,680	
	초	과	0.1m'당	1,160	
	야	간 할 증	정화조청소요금	7.0%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 제4항 관련)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단,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가. 오수정화시설 B.O.D, S.S(mg/ℓ) (1) 1일처리용량 100㎡미만 : 20초과 (2) 1일처리용량 100㎡~200㎡미만 : 20초과 (3) 1일처리용량 200㎡이상 : 20초과 (4) 골프장 : 10초과 나. 합병정화조 B.O.D, S.S(mg/ℓ) (1) 처리대상인원 50인용이하 : 20초과 (2) 처리대상인원 51~100인용이하 : 20초과 (3) 처리대상인원 101인용 이상 : 20초과 다. 단독정화조 B.O.D제거율(%)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 50% 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 50% 미만				
2.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 B.O.D, S.S 500mg/ℓ 초과	20	50	100	100
3. 법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오수정화시설의 미신고자 (1) 1일처리용량 200㎡미만 (2) 1일처리용량 200㎡이상 나. 합병정화조의 미신고자 다. 단독정화조의 미신고자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4. 법 제12조, 제26조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사용한 자				
가. 오수정화시설의 사용				
(1) 1일처리용량 200㎡미만	10	20	30	50
(2) 1일처리용량 200㎡이상	20	40	60	100
나. 합병정화조의 사용	5	10	20	30
다. 단독정화조의 사용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5	10	20	30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10	20	30	50
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사용				
(1)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0	40	60	100
(2)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	50	50	50	50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00	100	100	100
마.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사용	10	20	30	50
5. 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시공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말긴자				
가.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1) 1일처리용량 200㎡미만	20	40	60	100
(2) 1일처리용량 200㎡이상	30	60	100	100
나. 합병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	10	20	30	50
다. 단독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10	20	30	50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20	40	60	100
라.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50	100	100	100
마.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1)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50	70	80	100
(2)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100	100	10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6.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1) 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20	40	60	100
(2) 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30	60	100	100
7. 법 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 게 유지관리한 자.				
가. 기능의 정상적 유지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자.				
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 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관막힘, 오수의 역류 또는 누수방지를 위하여 펌프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 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				
(가) 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20	40	60	100
(나) 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30	50	100	100
(2) 합병정화조	5	10	20	30
(3) 단독정화조				
(가)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5	10	20	30
(나)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10	20	30	50
(4) 축산폐수처리시설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0	40	60	100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30	50	100	100
(5) 간이축산폐수정화조	10	20	30	50
나. 방류수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단,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1) 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6월마다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회측정	10	20	30	50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20	40	6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정화조 (6월마다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회 측정	5	10	20	30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10	20	30	50
(3)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6월마다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회 측정	10	20	30	50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20	40	60	100
(4)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분기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3회 측정	20	40	60	100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30	50	100	100
다.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년 1회 이상)				
(가) 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50	100	100	100
(나) 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100	100	100	100
(2) 합병정화조(년 1회 이상)	30	50	70	100
(3) 단독정화조(년 1회 이상)				
(가) 처리대상인원 100인 미만	10	20	50	100
(나) 처리대상인원 100인~500인 미만	30	50	70	100
(다)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	50	100	100	100
(4) 축산폐수처리시설(년 1회 이상)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50	100	100	100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100	100	100	100
(5) 간이축산폐수정화조(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되도록 수시 내부청소)	20	40	60	100
라. 1일 처리용량 100m ³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 정화조의 배출 방류수를 소독하지 아니한 자 단,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10	20	30	50
마. 악취발생 또는 해충번식을 방지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				
(가) 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20	40	60	100
(나) 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30	50	7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2) 합병정화조	10	20	30	50
(3) 단독정화조				
(가)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10	20	30	50
(나)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20	40	60	100
(4) 축산폐수처리시설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0	40	60	100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30	50	100	100
(5) 간이축산폐수정화조	10	20	30	50
바.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100	100
8.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축산폐수 저류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50	70	100	100
9.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간이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100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	30	40	100
11.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1)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30	50	70	100
(2)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50	70	100	100
12.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50	70	100
(2)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50	100	100	100
13.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 분뇨수집·운반업자	30	60	100	100
(2) 정화조청소업자, 축산폐수수집·운반업자	50	100	100	100
14.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징수한 자	20	50	100	100
15.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16.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	100	100	100
17.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단,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30	50	100	100
18.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단,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30	50	100	100
19. 법 제43조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 단,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1) 기술관리인	20	40	60	100
(2) 분뇨처리 담당자 등	50	70	100	100
20. 법 제44조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10	30	50	100
21. 법 제45조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2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30	50	100	100
23. 법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

(주)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부과 기준은 위반사례 이전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u>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법 제28조제2항 및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 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3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u>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제3항, 법 제28조제2항 및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 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p>	<p>②.....</p>
<p>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u>부패조의 스킴</u>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p>	<p>1..... 부패조등의.....</p>
<p>2. 오수정화시설 및 <u>축산폐수 정화시설</u>의 내부 청소는 정상 가동되고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p>	<p>2..... 축산폐수처리시설.....</p>
<p>제7조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7조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법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36조.....</p>

